

『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선산문화회관 내 정비·교체된 시설과 장비에 맞추어 조례를 현행화 하고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며
-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·운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.
-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설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의2)
- 시설 및 장비 관련 조항 정비 및 사용료 부과기준 현실화(안 별표)
 - 1) 종전 음식점 관련 사용료 삭제 및 소회의실 관련 사용료 신설
 - 2) 대강당 시설의 이용시간 구분 추가 및 인상(1일 사용 신설)
 - 가) 1일 (08:00 ~ 18:00) : 100,000원
 - 나) 오전(08:00 ~ 12:00) : 40,000원 → 50,000원
 - 다) 오후(13:00 ~ 17:00) : 50,000원 → 60,000원
 - 라) 야간(18:00 ~ 22:00) : 60,000원 → 70,000원
 - 3) 변경된 장비의 사용료 정비(영사기 → 프로젝터)

-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-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화(안 제13조)
- 입장 제한대상을 쉽게 풀어쓰고 차별적 용어를 정비(안 제14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04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 - 2)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 - 3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
 - 4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□ 본 『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시설의 위탁 및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의 현실화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화,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조례 안으로써
- 노후화(26년)된 선산문화회관의 내부 리모델링으로 교체된 시설·장비에 맞게 조례를 현실화 하고,
조례제정('89)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,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.